

실업급여 반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조 및 제40조에 의한 수급자격 불인정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 1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 건 명: 실업급여 반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 근 거: 고용보험법 제2조, 제40조,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조O옥	600824	대구시 달성군 (이하 생략)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 결정 통지	수급자격 불인정(피보험자격 취소)에 따른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	폐문부재
이O일	610722	대구시 달성군 (이하 생략)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 결정 통지	수급자격 불인정(피보험자격 취소)에 따른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	폐문부재

- 공고 기간: 2024. 1. 16. ~ 2024. 2. 5. (15일간)
-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센터 최봉수(Tel. 053-605-95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